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2000. 2. 19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2. 18)상정,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한 문 석)

가. 제안이유

-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이
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
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
고,
-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

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권한위임 확대 (제3조)
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을
⇒ 소속기관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에게 위임
(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)
- 별정직공무원 전보규정 보완 (제7조)
단위기관에서만 전보출
⇒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
- 근무상한연령의 예외규정 신설(제8조)
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된 근무상한 연령을
⇒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에 대하
여는 예외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)

-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을 검토한 바
- 소속기관장에게만 위임하던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의회사
무처장에게 까지 확대 위임하고,
-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
별정직 비서관과 비서의 정년(일반직인 5급 이상은 60세, 6
급이하 57세)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임기와
같이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

- 별정직 공무원의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 하도록 한 규정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 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규칙” 을 “조례 또는 규칙” 으로, “소속기관의 장” 을 “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” 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단위기관내에서 전보” 를 “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임용권자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임용권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 - - - - - - - <u>조례 또는 규칙</u> - - - - - <u>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</u> - - - - -</p>
<p>제7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<u>단위기관 내에서 전보</u>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7조(전보) - - - - - - - - - - <u>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
<p>제8조(근무상한연령)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단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<단서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근무상한연령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(특수경력직공무원)
 제2호 : 별정직 공무원
 가. 비서관, 비서
 나. 삭제('94.12.22)
 다.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-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(권한위임)
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기관^{의 장},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(권한위임 및 위탁사항)
 ②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과 같다.

[별표 2]

권 한 위 임 사 무

분 야 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총 무 과	1	충청북도의회사무처직원중 지방5급 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	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